

[별첨1]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<정관 변경 목적>

1.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내용 반영
 - 이사회 권한에 '내부통제 등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' 항목 신설(제39조)
2. 「상법」, 「전자증권법」 내용 반영
 - 배당기산일에 관한 「상법」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, 관련 조문 정비(제13조 등)
 - 「전자증권법」에 따라, 주주명부 작성·비치(제14조의2), 주주명부 폐쇄 절차(제15조) 등 관련 조문 신설/정비
3. 기타 조문 정비
 - 사업목적을 명확화(제2조),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 관련 명확화(제38조)
 -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및 3% rule 규정 명시(제45조) 등

<정관 변경(안) 신구조문비교표>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이 회사는 회사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, 아래와 같이 회사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.</p>	<p><현행과 동></p>	
<p>제1장 총 칙</p>	<p>제1장 총 칙</p>	
<p>제1조(상호) <생 략></p>	<p>제1조(상호) <현행과 동></p>	
<p>제2조(목적) <생 략></p> <p>1. <생 략></p> <p>2. <u>보험업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</u> 기타업무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2조(목적) <현행과 동></p> <p>1. <현행과 동></p> <p>2. <u>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</u> 업무</p> <p>3. <u>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인·허가 등을 받은 업무</u></p>	<p>조문 명확화</p>
<p>제3조(소제지) <생 략></p>	<p>제3조(소제지) <현행과 동></p>	
<p>제4조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kyobo.co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 되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.</p>	<p>제4조(광고방법)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kyobo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 되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.</p>	<p>조문 명확화</p>
<p>제2장 주 식</p>	<p>제2장 주 식</p>	
<p>제5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~ 제7조(주식의 종류) <생 략></p>	<p>제5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~ 제7조(주식의 종류) <현행과 동></p>	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제8조(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) ① ~ ⑥ <생략> ⑦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 <u>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8조(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) ① ~ ⑥ <현행과 동> ⑦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 그러나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.</p>	상법 반영
<p>제9조(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) ① ~ ④ <생략> ⑤<u>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9조(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) ① ~ ④ <현행과 동> <삭제></p>	상법 반영
<p>제10조(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) <생략></p>	<p>제10조(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) <현행과 동></p>	
<p>제11조(주식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전자등록한다.</p>	<p>제11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	전자증권법 반영
<p>제12조(신주인수권) <생략></p>	<p>제12조(신주인수권) <현행과 동></p>	
<p>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이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3조(동등배당)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 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	상법 반영
<p>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~③ <생략>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p>	<p>제14조(명의개서대리인)①~③<현행과 동>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</p>	조문 명확화
<p><신설></p>	<p>제14조의2(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) ①회사는 전자등록기관 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. ②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전자증권법 반영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제15조(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) <u>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.</u> <u>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u> <u>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5조(주주명부 기준일) <u>① <삭 제></u> <u>① <현행과 동></u> <u>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전자증권법 반영
<p>제3장 사 채</p>	<p>제3장 사 채</p>	
<p>제16조(사채의 발행) <생략></p>	<p>제16조(사채의 발행) <현행과 동></p>	
<p>제17조(전환사채의 발행) <u>① ~ ④ <생략></u> <u>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7조(전환사채의 발행) <u>① ~ ④ <현행과 동></u> <u>⑤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</u></p>	상법 반영
<p>제18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<u>① ~ ④ <생략></u> <u>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8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<u>① ~ ④ <현행과 동></u> <u><삭 제></u></p>	상법 반영
<p>제19조(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) <생략></p>	<p>제19조(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) <현행과 동></p>	
<p>제20조(사채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를 전자등록한다.</p>	<p>제20조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 다만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/p>	전자증권법 반영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제39조(이사회 심의·의결사항 등) <생략> 1.~5. <생략> <신설> 6.~9. <생략></p> <p>제40조(이사회 의사록) <생략></p> <p>제41조(위원회) ①~② <생략> <신설></p> <p>제42조(경영임원) ~ 제44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<생략></p>	<p>제39조(이사회 의 권한) <현행과 동> 1.~5. <현행과 동> 6. <u>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</u> 7.~10. <현행과 동></p> <p>제40조(이사회 의 의사록) <현행과 동></p> <p>제41조(위원회) ①~② <현행과 동> ③ <u>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③,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42조(경영임원) ~ 제44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<현행과 동></p>	<p>지배구조법 반영</p> <p>조문 명확화</p>
<p>제6장 감사위원회</p> <p>제45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<생략>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. <신설> <신설> <신설></p>	<p>제6장 감사위원회</p> <p>제45조(감사위원회의 구성 등) ① <현행과 동>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<u>감사위원회</u> 위원 (이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. ③ <u>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.</u> ④ <u>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 ⑤ <u>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최대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</p>	<p>지배구조법 반영</p>
<p>제46조(감사위원회의 직무) <생략></p> <p>제47조(감사록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<u>감사위원회 위원</u>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	<p>제46조(감사위원회의 직무) <현행과 동></p> <p>제47조(감사록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<u>감사위원</u>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	<p>조문 명확화</p>

현행	변경(안)	비고
제7장 회 계	제7장 회 계	
<p>제48조(사업연도)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매사업연도말에 <u>계산</u>한다.</p>	<p>제48조(사업연도)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매사업연도말에 <u>결산</u>한다.</p>	조문 명확화
<p>제49조(재무제표의 승인·공고)</p> <p>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~3. <생략>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이사는 결산기마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④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의 6주간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, 제3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<u>이사는</u>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이사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없이 <u>대차대조표</u>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49조(재무제표의 승인·공고)</p> <p>①<u>대표이사</u>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~3. <현행과 동></p> <p>② <현행과 동></p> <p>③<u>대표이사</u>는 결산기마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④<u>대표이사</u>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의 6주간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대표이사</u>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, 제3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<u>대표이사</u>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<u>대표이사</u>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없이 <u>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</u>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조문 명확화
제50조(이익금의 처분) <생략>	제50조(이익금의 처분) <현행과 동>	
<p>제51조(이익배당) ① <생략></p> <p>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<u>수종의</u>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의 배당은 <u>매결산기말</u>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	<p>제51조(이익배당) ① <현행과 동></p> <p>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<u>종류</u>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의 배당은 <u>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날</u>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한다.</p> <p>④ <현행과 동></p>	조문 명확화
제52조(중간배당) ~ 제54조(위임규정) <생략>	제52조(중간배당) ~ 제54조(위임규정) <현행과 동>	
부 칙	부 칙	
제1조(제정) - 제48조(개정) <생략> <신설>	제1조(제정) - 제48조(개정) <현행과 동> 제49조(개정) 이 정관은 2025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.	

[별첨2]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약력

성명	출생년도	주요약력	비고
문효은	1967년	고려대 언론대학원 정보통신 석사 前 (주)카카오(舊, (주)다음커뮤니케이션) 부사장 現 교보생명보험(주) 사외이사	-
박소정	1979년	Wharton School, University of Pennsylvania 보험학 박사 現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現 한국보험학회 이사	-
하리 라잔 (Hari R. Rajan)	1977년	Wharton School, University of Pennsylvania(MBA) 現 Investcorp Corsair, Managing Partner 現 교보생명보험(주) 기타비상무이사	-

[별첨3] 제3호 의안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약력

성명	출생년도	주요약력	비고
지범하	1955년	Wharton School,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 박사 現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특별초빙교수 現 교보생명보험(주)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	-
김두철	1953년	Georgia State University 위험관리 및 보험학 박사 現 상명대학교 융합기술대학 명예교수 現 교보생명보험(주)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	-
이두봉	1964년	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現 이두봉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교보생명보험(주)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	-